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4 - 제2호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 1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보건복지부) ····· 3

3.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환경부) ····· 12

4. 지역 상권활력 회복 (중소벤처기업부) ····· 15

5.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 (행정안전부) ····· 18

6.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20

7.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자원부) ····· 25

8.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교육부) ····· 29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

1.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지방소멸 위기 대처 (전라남도) 35

2.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충청북도) ····· 37

3. 농가 소득배당 (경상북도) ····· 40

4.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서울특별시) ····· 43

목 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49

2.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51

3. 그린바이오산업의 농업부문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농촌경제연구원) ····· 59

4. 건설업 ESG 확산과 기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61

5. AI 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한국교육개발원) ····· 63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첫만남이용권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고려한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보건복지위) ····· 69

2.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국토교통위) ··· 74

3.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산정제도 개선 필요 (기획재정위) ····· 78

Ⅴ. 기타 참고자료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24.2.20.시행) ····· 83

2. 워킹맘 25%p 급증…「경단녀」 사라진 홍콩의 기적 뒤엔 이들이 있었다 (조선일보) ····· 84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 신속한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진행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1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2 추진배경

○ 기존 「주민조례발안법」에는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지연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 의무를 부여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입안 과정 참여 확대**

3 주요내용

○ **(처리기한)**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 · 각하 결정

○ **(홍보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 서명방법, 절차 등 **제도홍보 의무 부여**

○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 필요** ('24.2.13.확인 기준)

⇒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 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별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② (생 략)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 략)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1) 및 의사인력 확대 방안('24.2.6)을 발표하여 의사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함**

1 추진배경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3.10.19) 이행을 위해 **필요조건**으로서 **의사 수 확대**와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 마련** 시급

< 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 >

구분	이유	원인
필수의료 기피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 평균 은퇴 연령(의협 조사) 65세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 •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 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 • 응급·당직 多, 야간·휴일 대기 •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 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量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 비급여진료비(조원): ('10)8.1→('21)17.3
지역의료 악화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 '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 •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2 추진방향

◈ (10년 內)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 해소"

◈ (10년 後) 근본적 해법으로서 제도·구조 개혁 완성
➡ "청년 의사가 활약할 대한민국 新 의료생태계 전환"

❶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충**,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 사회 전반의 **의사 수요충족, 좋은 일자리 확대**

❷ **(지역의료 강화)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수요·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 지역완결 전달체계
- **우수 인력 확보, 투자 확대, 수도권 유출 최소화** 등 지역 기반 강화

❸ **(의료사고 안전망)**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 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❹ **(공정 보상)**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3 주요내용

○ (패키지 1)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혁신

❶ **(의사인력 수급 개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

- **(의대정원 확대) '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 확대**

* 現 취약지 약 5천명 + '35년 약 1만명(KDI, 서울대, 보사연)

**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증원 규모 결정

<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24.2.6) >
▸ (개요) 보건복지부는 '24. 2. 6일에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함 ▸ (주요내용) - **(증원규모)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3,058명 → 5,058명)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 확충** - **(배정원칙)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

❷ **(교육·수련 혁신)** 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

❸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

□ **인력 운영 혁신**

❶ **(전문의 중심 병원)**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❷ **(공유형 인력 운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24)

❸ **(업무범위 개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 추진

❹ **(면허관리 선진화)** 의료 質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 체계 구축 등 추진

○ (패키지 2)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❶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❷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❸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❹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❺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❶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❷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❸ (지역필수의사制)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 도입 추진

< 지역필수의사制 검토 예시 >
▸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下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 교수 채용 할당 + 定住 지원 → 일정 기간 지역 근무
▸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충분한 수입 + 定住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

□ **지역의료 투자 확대**

❶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❷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수도권 병상 관리**

❶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❷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 (패키지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❶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❷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❶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❷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❸ (공공인프라)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❶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❷ (분만 外)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 응급실 안전 강화

❶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❷ (위험요소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패키지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❶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❷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 중심 수가 산정 체계**를 보완하는 **정책 수가 도입·확산**('24)

❸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❶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❷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 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❸ **(미용 의료 개선)** 국민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보건의료과]**

○ **(의대정원 확대)** 의대 증원 수요 및 수용 역량을 파악하여 **최대한 의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대·원광대와 공동 대응**

○ **(지역필수의사제)** 지역필수의사로는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역부족**,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인력 양성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여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 총력 대응**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 사업 선정(예수병원, 국비 4억원) '24. 7월부터 운영

○ **(의료체계 구축)**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 공모 적극 대응으로 필수의료체계 강화

-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23~'25년),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인건비 지원, 신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도 자체 대응

별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카드뉴스

□ 필수의료 정책 패캐지 1 (의료인력 확충)

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



패키지❶ 의료인력 확충

[인력 양성] 충분한 의사 확보

- 의대정원 확대, 수급·조정 시스템 구축으로 의사 수 확보
- 의대 교육여건 개선(교수진, 교육 과정, 인프라)
- 병원 수련환경 및 제도 개선(인턴 제도, 전공의 근무 여건)

[인력 운영] 병원의 의사 고용·배치·운용 구조 혁신

-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배치 기준 개선, 필수의료 교수 확충)
-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운영

□ 필수의료 정책 패캐지 2 (지역의료 강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 인프라
유지 곤란



패키지❷ 지역의료 강화

기능·수요 중심 네트워크형 전달체계로 전환

- '상급종합병원-중소병원-의원' 종별 역할 정립 +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내 협력진료 의료기관 네트워크, 전문가 기반의 환자이송 네트워크 재정 지원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

-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치료 후 회복기 의료 서비스 등

안정적인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수도권 병상 관리
•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 수련 및 전공의 배정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

□ 필수의료 정책 패캐지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부담감



패키지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소송 부담완화	피해자 권리구제체계확립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추진	•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소송 전 조정·중재 등 합의 지원	•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강화

□ 필수의료 정책 패캐지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의료 분야와 격차



패키지❹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 필수의료 분야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확산
- 사후 보상,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 비급여 보고 제도 전면 시행
- 실손보험 합리적 개선
- 시술 자격 개선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미용의료 제도 개선

3.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 (환경부)

◇ 정부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함.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임

1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2 추진배경

○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 비전 아래, 친환경·고효율 조명 설계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조명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3 주요내용

○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

- 빛공해 체감도 기준 기반 조명 관리 추진 및 조명 용도별(보안, 관광 등) 합리적 밝기 기준 마련, 농작물 빛공해 피해 배상 기준 정비 등

○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

- 자자체 옥외 조명 사전 심사 제도 확대 및 선제적 빛공해 민원 대응

○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

- 지역사회 참여 빛공해 문제해결 시범사업 실시 등

○ **좋은빛 문화 정착**

- 맞춤형(지자체, 전문인력 등) 교육 다양화, 생태환경·지역행사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생활환경과]

○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빛공해 관련 민원은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 3,214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은 2022년에는 7,574건으로 약 2.5배 증가함. 이에 여러 지차체에서 '빛공해방지법'과 그에 따른 '빛공해 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공해 저감을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사업'을 추진 중이고, '빛공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잘못된 인공조명으로 자연 생태계와 일상에 피해사례를 탐색하고 조화로운 인공조명 운영을 꾀함. 또한,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 허용 기준 준수여부 등 사전 확인 승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광주시는**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조명기구를 LED로 전면 교체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부서간 협력 및 빛방사 측정 기반시설 구축을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는 작년 12월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북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

○ 전북특별자치도는「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의거, 빛공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사업비 49백만원)이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022년부터 지정하고 있으나(신규시설 1년간, 기존시설 3년간 유예기간), 중소도농복합도시가 많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도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고, **관리구역 내 1~4종 기준****에 따라 인공조명의 조도·휘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 규제없이 설치됐던 저개발지역 소상공인의 간판조명이 현재 규제대상이 되어

논의가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분포, 지형, 건물 등 생활환경 전반을 고려한 용도별(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조명 관리 및 개선사항의 정립도 중요함

별첨 **서울시 옥외조명 사전 심의대상* 및 조명환경 관리구역** 구분**

서울시 옥외조명 사전 심사 심의 대상

구분	시설 규모	비고
건축물	공공청사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 구조물 등	-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21.7.1 이후 적용
	보안등, 공원등 30등 초과 계획	
	심의 제외 : 공간조명 중 광원 교체 등 단순 개량 사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한시적 위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	-
서울시 역점 사업(권고)	시 역점사업 대상에 해당 시 사업부서는 예비준공검사 단계에서 도시경관담당관에 심의(자문) 신청	'21.7.1 이후 적용

NEWSPIM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구분 〉

구분	적용구역	예시
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종	**안전·편의**를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이지만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4종	**상업활동**을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이지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중심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지역 상권활력 회복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골목시장 등 지역 상권활력 회복**

1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전통시장법)제2조제2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

2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및 사용처 확대**

* 발행규모 : '23. 4조원 → '24. 5조원, 사용처 : '23. 20만개 → '24. 25만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를 통해 신규 지정을 촉진**하고 고객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 가맹제한 해제 추진** ('24.상,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

- 상품권 月 구매한도를 상시 상향(+50만원) 하여 상품권 수요 증대 ('24.1)

* 지류형 100→150만원, 충전식카드형 150→200만원, 모바일 150→200만원

3 상권육성

○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코어 상권'('24.1~, 5곳)과 예비지역상권('24.1분기, 10곳), 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명품시장('24.하)' 육성

- 발전전략을 기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상권주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마련 (지역상권법 개정안 발의, '23.10)

* (기획자)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
(기금)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

○ 소비 분위기가 고조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 (목표 연 4조원)

-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각종 문화·판촉 행사 및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여 대규모 행사로 추진 ('24.5~)

- 국내 **외국인 대상 동행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확대**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해외**로 **확산** ('24.5~)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 전북자치도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외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24.1.4. 전북도민일보 "노란 우산 공제금 규모 역대 최대", '24.1.29. 전북일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도내 소상공인에 직격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추진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상권활성화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 설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및 환급 행사로 활기를 불어넣었으나('24.2.5. 전북일보 "구매액 30% 환급, 전통시장 활기), 더딘 경기회복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검토 등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의 예산을 줄이고,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에서도 제도 정비 및 현황 파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전통시장 육성과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신규지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617호 '23.7.3.)하고 있음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받아 이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뿐 아니라 낙후된 시설 보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 등도 가능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성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규제 완화 검토 필요

별첨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조례 반영 현황

1.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 현황

지역	조례명	면적기준	상점수 기준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상업지역:25개 이상 -상업외지역:20개 이상 -농어촌지역:20개 이상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 제외	-상업지역:25개 이상 -상업외지역:20개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도로, 공원 등 제외	-상업지역:30개 이상 -상업지역외:25개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상업지역:30개 이상 -상업외지역:25개 이상 -영종·용유지역:20개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로, 주차장 부지 등 제외	-상업지역:30개 이상 -상업외지역:25개 이상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상업지역:25개 이상 -상업지역외:20개 이상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상업지역:25개 이상 -상업외지역:20개 이상	

5.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 확보

1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

2 주요내용

○ 지난 12월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24 ~ '28)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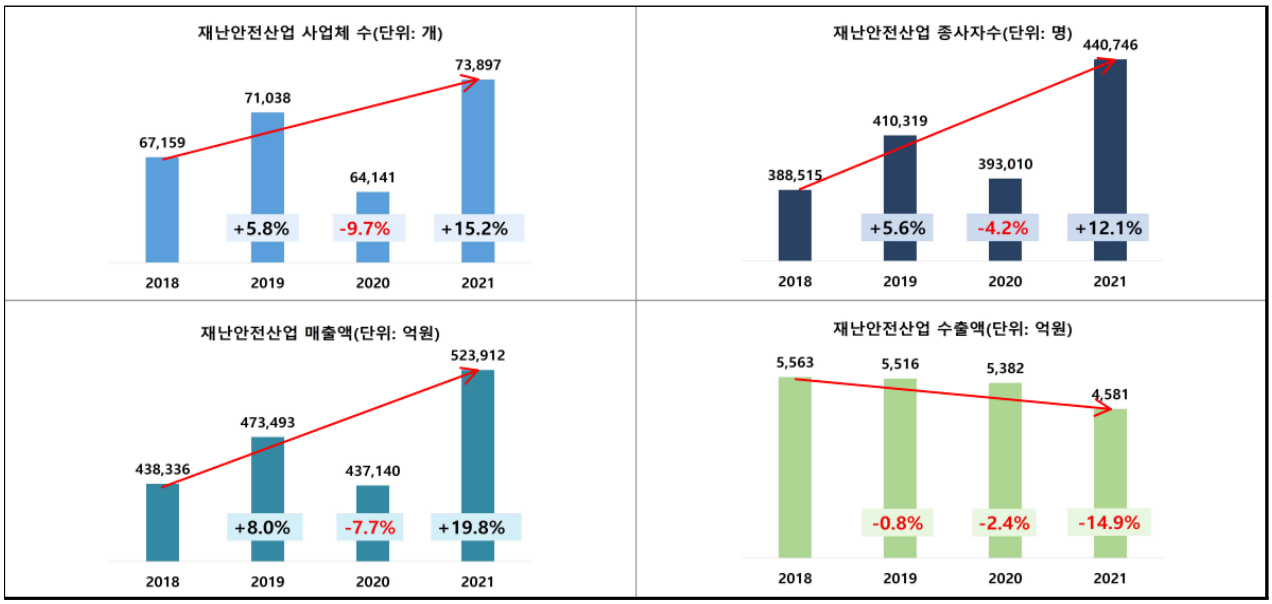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설립 추진

- 국내 재난안전기업 제품과 기술 지원 위해 '26년까지 총 3개소 설립
- 지역별 재난유형 고려 성능·시험 인증 플랫폼 구축
- 신기술 및 인증제품 우선 활용 적극 권장 및 실제 현장 보급 확대
- '재난안전산업 공제조합' 설립 검토, 보증료 할인 등 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3 재난안전산업 현황

○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성장세

-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약 52조



※ '20년은 코로나 19 여파로 산업규모 감소

○ 재난안전사업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역량도 투입되어야 함

○ '23년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안전정책과)**

○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 (계속)

※ 사업비 : 18,000백만원(국비 9,000, 도비 6,300, 시비 2,700) *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 사업목적 :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도 · 이슈 반영 지역 주도적 사업기획 · 개발 · 실증을 통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

- 군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중심, '침수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플랫폼'('23 ~ '26) 구축
- 배수펌프 내구성능 시험장비, 침수안전 제품 설계 프로그램 등 수방 성능평가 장비 마련

○ 재난안전기업 플랫폼 활용 위한 방문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6.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1 관계법령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농지법」

2 개발제한구역 (GB) 규제 혁신

○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폭넓게 해제 허용

- 비수도권 지역 주도 추진 전략사업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총량의 감소없이 그린벨트 해제 (국무회의 등 심의 후 특성에 맞게 유연 적용)
-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 추진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낡은 규제 혁파, 새로운 규제 신설 금지

- 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 일괄 해제 방안 마련 (통합심의 절차 도입)

○ 지역 생산시설 증설 지원,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

- 개발진흥지구 공장 건폐율 현행 40% ⇨ 70%까지 완화
- 생산관리지역 환경오염 우려 적은 경우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상수원보호구역 500m 밖, 경계에서 100m 밖 등 계획관리지역 수준 허용

○ 자연 친화적 교육 기회 제공 위해 녹지·관리지역 대안학교 설치 허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학력 인정 학교 (현재 51개교)

3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

-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은 별도 제한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나 수직농장은 지목 변경,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컨테이너형 최장 8년)만 농지 위 설치 가능한 점을 개선*

  *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 및 일정 지역 내 별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3ha이하) 정비

-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 ⇨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 추진

○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도시민 · 주말체험영농인 등 체류 가능 임시 거주시설 제공

  * 5도(都) 2촌(村)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 증가에 맞춘 저 비용 부담 농촌 생활기회

《 정책효과 》

○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 마련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 활성화 (기업투자 확대 기대)

○ 전북자치도 개발제한구역은 **'03년 6월 전면 해제** 되어 정책 효과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혜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음

○ 과소화 · 고령화 등 농촌소멸 위기 타개, 지역 정주여건 개선

○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 전북자치도는 기 제정된「전북특별법」에서 「농지법」적용의 특례를 통하여 **농생명지구내 농업진흥지구의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어 정책실행과정에서 대응이 필요함

별첨 토지 이용규제 개선방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이전 정부

"수동적·경직적 제도운영으로 지역투자 유치 한계"

윤석열 정부

"❶ 지역, ❷ 환경, ❸ 기업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지원"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해제총량	정책방향	해제총량
중앙정부 중심 획일적 규제	**엄격한 해제총량** 적용으로 지역사업 추진 제한 → 지역의 개발 가능 사업 제한	지방 권한의 확대, 유연한 대응	국가전략 + 지역전략사업(비수도권) **해제총량 예외 인정** → 지역의 개발 가능사업 확대
환경등급	예시 : A산업단지 (이전)	환경등급	예시 : A산업단지 (개선)
환경 1~2등급지는 **GB해제 불허** → 개발가용지 확보 한계 및 부지정형화 곤란		**환경 1~2등급지 해제 허용** (대체지 지정 조건) → 그간 개발이 불가능했던 구역도 개발 가능	

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 금지

- 토지이용규제법에 등록해야 규제 신설 허용
-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 추가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기존의 낡은 규제는 철폐

- 현재의 336개 토지이용규제를 재검토하여 낡은 규제 혁파
- 중첩규제는 해제하기 쉽게 일괄심의 도입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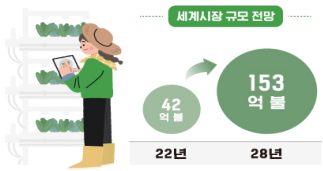
별첨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01 수직농장

추진 배경

농업에 첨단기술이 집적된 수직농장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각광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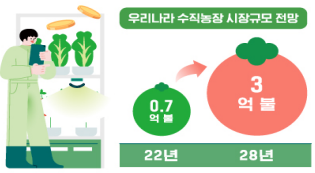
수직농장 농지 위 설치 허용



· 가설건축물 형태 일시사용기간 연장
·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일정지역 내 농지 설치 허용

기대 효과

수직농장 국내 시장규모 확대 및 관련 기업의 투자 확대 기대



02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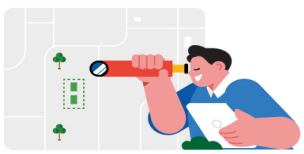
추진 배경

도로,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묶여있어 토지활용에 제약



주요 내용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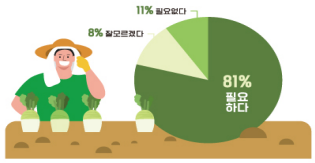
자투리 농지를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에 활용



03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 배경

5도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 증가



일반국민 ·농업인 2.6천명 대상 수요 설문조사

주요 내용

농지에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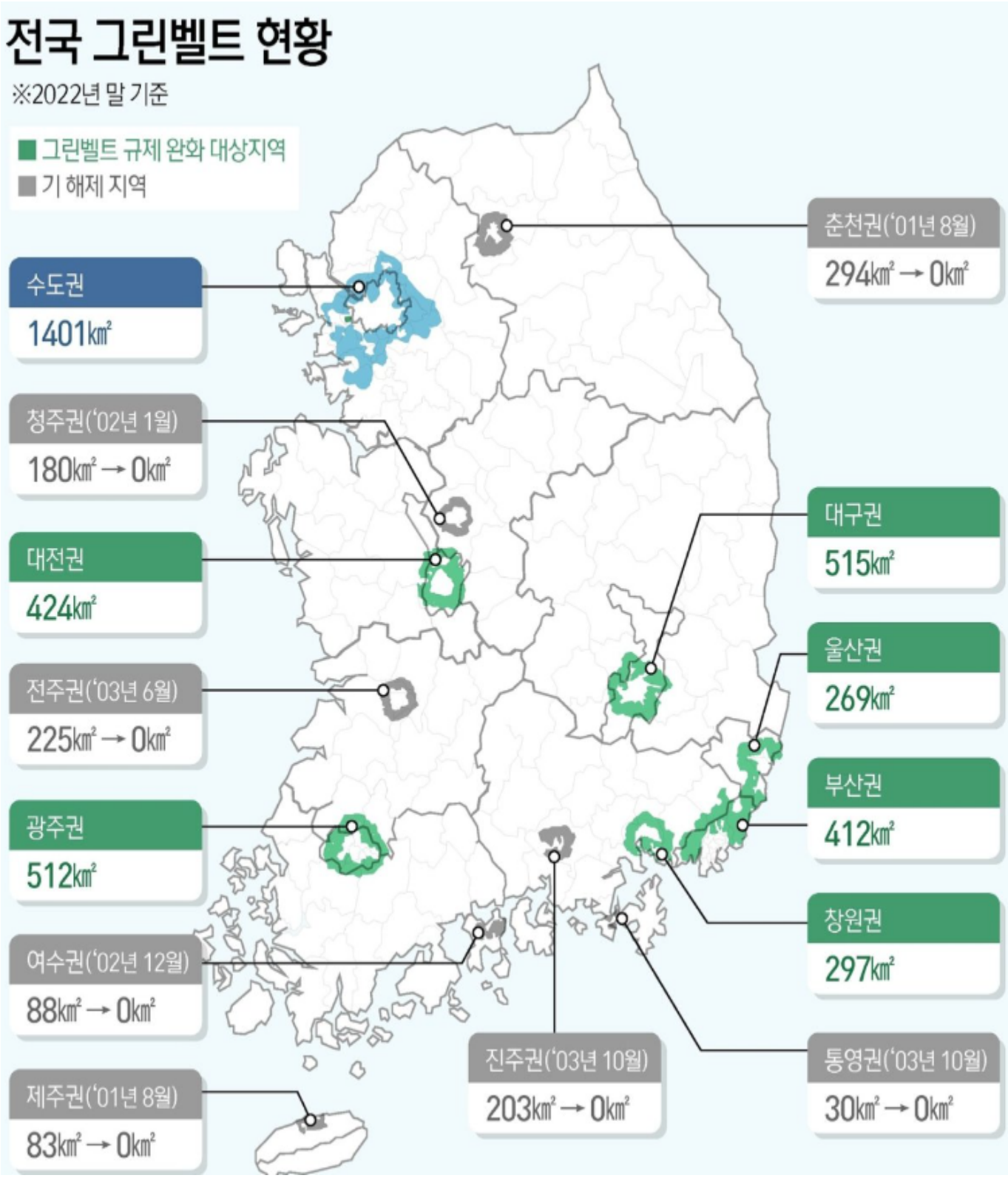
기대 효과

체류공간 조성 허용으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별첨 **전국 그린벨트 현황**



※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7.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 기업 투자환경 혁신 등 첨단 바이오산업 주도권 확보**

1 관계법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2 주요내용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 속도감 있게 **확보** 지원

○ 민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 최초 지정에 이어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지정 예정** ('24.上)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확대 (예타추진, 약 5,000억원)
- 바이오 소부장 사업화 지원 등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 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종합 평가

-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기반 특화단지 소위원회 검토, 평가 진행
- 첨단위 심의 · 의결 후 특화단지 지정

3 지원내용

○ 특화단지 조성 사업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 · 허가 신속 처리**

○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

○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 특화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 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4 신청요건

○ **(신청대상)**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 **(신청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

○ **(신청기간)** '23.12.27. ~ '24.2.29. 18:00까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탄소바이오산업과)**

○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

○ 인프라가 충분한 바이오 소재 기반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도내 연구시설 활용,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TF팀) 등을 통해 특화단지 유치 준비

○ 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 선도기업 2곳 포함 JBK랩, 레드진, 인핸스드바이오 등 관련 기업과 투자협약 및 예정(13개 社)

○ 전북연구원 '첨단전략산업(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대응' 과제를 통한 특화단지 유치 전략 및 발전방향 연구

- 주요 기업 투자 계획 및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별첨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여건 및 강점

1 우리도 여건

○ **도내 5개 대학**(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중심 의·치·한의·약학과** 등 **88개 관련학과 개설** 및 **바이오 관련 130개 사업단** 보유로 **전문인력 풍부**

- 관련학과 : 88개 2,510명 졸업 (2020년 기준, 전국 5.1%)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한의학	동물·수의학	생물학	약학	의학
학과	**88**	4	3	13	8	5
졸업생	**2,510**	154	110	313	188	294
구 분	**생명과학**	**화학**	**의료공학**	**치의학**	**신소재학**	**반도체학**
학과	20	15	5	6	7	2
졸업생	398	427	126	187	240	73

- 사업단 : 130여개* (전주대10, 군산대6, 우석대8, 원광대40, 전북대66)

* 의학30, 바이오 소재19, 의료기기16, 헬스케어15, 식품10, 농생명7, 바이오 융합7, 바이오 화학9, 제약6, 동물5, 미생물1, 해양바이오4, 화장품1

○ **국공립 연구기관 : 24개소**가 소재, **풍부한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구 분	기 관 명
국공립 (4)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정부출연 (7)	한국식품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도 출연 (2)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시·군 출연 (7)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진안홍삼연구소
기타 비영리 (4)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캠틱종합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우리도 강점

○ 기 구축된 인프라 연계 활용으로 레드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 (유효성) 전북대병원(의생명연구원),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생공연 등
- (비임상) 안전성평가연구소
- (임 상)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우석대병원, 예수병원 등

* 전북대병원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23. 3월)

○ 연구개발특구·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및 창업촉진 유리

- (특 구) 도 단위 전국 최초 연구개발특구지정('15.8월, 농·생명융합거점지구 등 3개 권역)

※ '22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추진 ('16~23.2월)
- ('22년말 기준) 연구소기업 195개 설립, 첨단기술기업 23개 지정 및 재지정 17건,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지원 318억(144건), 투자연계 817(133건), 기술창업(311건)
- ('21년말 기준) 기술이전 출자 418건(250억), 기술사업화 매출액 155개사(713억원), 신규고용 1,345명

- (클러스터) '동물헬스케어 및 화장품 클러스터 구축으로 그린·레드 바이오산업 활성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240억 ('20~'23년)
시제품생산지원플랫폼	300억 ('23~'25년)
인수공통 연구지원보존센터	350억 ('25~'27년)
동물의약품 임상 3상 시험지원센터	223억 ('24~'26년)

천연 화장품 클러스터	
집적화단지조성 (71천㎡)	50억 ('11~'13년)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GMP)	61억 ('14~'15년)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70억 ('16~'17년)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60억 ('18~'19년)
지식산업센터	257억 ('18~'19년)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190억 ('23~'25년)
첨단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조성	190억 ('24~'27)

- (창 업) 정읍 기업 입주 시설 활용, 산연 공동 R&D추진으로 예비 창업기업 육성

구분	기 관 명	면적 (㎡)	근무 인원	입주 공간	활 용 방 안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37만	241명	15실	유효물질 발굴, 소재합성, RI표지 신약합성 및 동태평가 등, 공동 R&D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9.6만	181명	6실	후보물질 발굴 및 유효성 평가 등, 공동 R&D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15만	106명	1실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및 비임상 안전성 평가(GLP)
국립대학 및 기타기관	전북대학교 정읍첨단과학캠퍼스	1만	30명	15실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및 CMC 기술지원 등, 산학연 공동 R&D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	2.7만	7명	-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계 RI기술 개발 및 신약개발.평가 장비 개발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1.5만	15명	12실	미생물 기반 후보물질 발굴 및 GMP 기술 지원 등, 공동 R&D

8.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교육부)

◇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운영**

1 추진배경

○ 심각한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필요

○ 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최소화,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

○ 초등 방과후·돌봄체제 혁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2 추진과제

○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장애학생·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

○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

3 주요내용

○ **(대상)** 이원화된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연차별 확대*

* ('24년) 초1[1학기 2,000개교, 2학기 전국 확대]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맞춤형 지원)** 장애학생(특수학교 초등과정 지원), 이주배경학생(이중언어 능력 향상), 취약계층(늘봄 바우처)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시설 확충·개선)** 늘봄교실 확충*, 학교공간 리모델링(아동친화적 교실환경), 모듈러교실 설치 추진

* 늘봄교실 수(실) : ('22년) 14,970 → ('23년) 15,147 → ('24년 목표) 15,347

○ **(거점형 늘봄센터)** 과대·과밀학교의 늘봄 수요를 위해 거점형 센터 신축

○ **(학교 밖 연계)** 대학, 지자체(아파트단지, 도서관, 복지공간 등), 지역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등과 연계·협력한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

○ **(관련 법 제정)** 공간,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 등 내용을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법적 근거 마련('24년 하반기)

○ **(초1 무료 맞춤형)** '24년 초1 희망학생에게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질 제고)** 지자체(박물관, 체육시설) , 지역대학(AI, 디지털), 단체·협회(드론, 금융교육, 축구)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경험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24년 하반기 개통 가칭 '늘봄허브')

○ **(전담조직 구축*)**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25 늘봄지원실 운영 및 전담 행정인력(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등) 배치

* ('24년 1학기) 기간제교원 2,250명 배정 → ('24년 2학기) 늘봄지원실 설치 완료 및 업무 이관 → ('25년)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완성(2,500명 내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미래교육과)

○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 운영 학교: 24년 1학기(초 75개교) → 2학기(도내 모든 초등학교)
- 주요 내용
  - **(운영 시간)** 학교 안은 최대 18시까지, 이후 발생하는 수요는 최대 20시까지 학교 밖에서 운영
  - **(학교 밖 운영)** 거점돌봄센터(전주, 군산, 고창) 및 3개 유형(돌봄형, 거점프로그램형, 토요프로그램형)으로 지역과 연계한 늘봄기관(211개 기관 예정) 활용

별첨 운영 前(방과후 · 돌봄) → 後(늘봄학교) 비교

	지금까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		앞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	→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초1~6학년 100%
이용 시간	**오후 1~5시까지 중심** * 돌봄은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8시)
비용	**프로그램 비용** **학생·학부모 부담** *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	→	**프로그램 비용 무료** * 연중 매일 2시간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
프로 그램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25년~)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후)	→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운영 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1.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지방소멸 위기 대처 (전라남도)

◇ 전남도, 청년 주거비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지역 주도 이민정책 등 지방소멸 대응 노력

1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 야기

○ 지역 활력의 중심이 되는 청년층의 주거 및 일자리 대책,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주도 이민정책 대두

2 주요내용

○ **(청년정책)**

- 청년비전센터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창업지원 등 13개 사업 추진
-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건립中, 청년공동체 활동 사업 지원
- 호남청년 아카데미 운영, 광역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25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이민정책)**

- **전담부서 신설 : 인구청년이민국** (전국 최초), 이민정책과
-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전라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정착을 위한 **광역비자제도 도입 건의** (도→정부) **추진**
-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외국인지원 TF' 운영**, 이민정책 발굴 노력

3 기대효과

○ '인구, 청년, 이민'의 한 개 조직으로의 편성 및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인구청년정책국으로의 격상, 저출산 위기극복 및 지방소멸 극복 정책 실현

○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흡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 (중앙정부 외국인 정책 변화 대응)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추진단)**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청년 · 저출산 극복 ·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中

○ 법무부↔전라북도, 외국인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3.10.30.)

○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운영 (대외협력과 - 국제외국인정책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 확대 대응 및 외국인정책 지원계획 수립 / 시행관리

○ 「전북특별법」에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반영되어 도의 지구 · 특구 내 연구기관 및 기업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노력

시행 전		시행 후
▸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 체류기간 부여 - 외국인근로자 (E-9) : 4년 10월 - 지역특화형비자 (F-2) : 5년 ▸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 필요성 대두	⇨	▸ 특구·지구 연구기관 및 기업의 외국인 고용 절차 간소화 * 인력공급 원활화, 체류기간 확대 ▸ 농생명 분야 인력난 해소, 지역산업 활성화

2. 남성 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사업 (충청북도)

◇ 충북도내 중소기업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 진행

1 추진배경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충북 내 중소기업 비율(87.2%)이 높은 편으로 도내 기업의 인식개선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 1.31. ~ 2.21.

○ (지원규모) 6개사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자부담 없음)

○ (지원대상)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남성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 (지원내용)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Ⅰ,Ⅱ지원

- 패키지 Ⅰ :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 Ⅱ : 소득대체 보전금 + 행복일터기업환경개선

구 분	사 업 비	지 원 내 역
패키지 (Ⅰ)	10,000천원	①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종사자) (육아휴직자1명당, 최대 2인, 최대 10개월, 최근 3년 내 대상자가 있을 시 소급적용가능) 300천원×10개월×2명=6,000천원 (대상) 대체인력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을 한 동료 재직자 (제외대상)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자, 병역특례자, 정부지자체 인건비지원을 받는자, 본 사업에 부적합 자로 판단되는 자 ②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기업) (가족친화 및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및 워크숍, 조직문화컨설팅 등) 4,000천원×1식=4,000천원 ※ 각 지원내역은 신청기업 여건 상 사업비 편성 협의하여 지원 가능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구 분	사 업 비	지 원 내 역
패키지 (Ⅱ)	10,000천원	**① 소득대체 보전금 (종사자)** (남성육아휴직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한 소득 보전금 최대 10개월) 300천원×10개월=3,000천원 **②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기업)** (휴게복합시설 등 시설개선 및 직원복지후생 물품지원) 7,000천원×1식=7,000천원 ※ 각 지원내역은 신청기업 여건 상 사업비 편성 협의하여 지원 가능

*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00천원 내에서 교차 선택 가능
** 남성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협약 유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여성가족과]**

○ 전북은 2011년도 이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2017년 35.8만명→2022년 24.9만명) 하였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817명('23.12.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충북의 '남성육아휴직 기업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장려에 관한 실태조사(도 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 운영기준 및 실태파악 등) 및 관련 조례안 입안 검토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별첨

육아휴직한 부모 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안내

(서울시 보도자료 발췌 / 2024.02.01.)

1년 전 딸을 출산한 김○○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월 상한액 150만원)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 서울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 2024년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확대에 따라 2024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2024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3. 농가 소득배당 (경상북도)

◇ **이모작 생산기반 마련으로 소득증대 향상을 통하여 소득을 배당하는 주주형 공동영농 특화모델 조성**

1 추진배경

○ 고령화된 농촌 유지와 청년 유입을 위해 공동영농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해 농가소득 2배 달성을 위한 이모작 생산 기반을 마련

○ 농가와 도시 근로자의 소득이 59% 격차가 나고 저출생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지방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 공간의 재정비와 농산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인 문경지구(율곡리 일원)에서 참여 농가에 **소득배당 실시**

- 이모작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에게 **평당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
- 총지급 농가 수는 80농가(110ha)
- 배당금은 총 9억 9천 8백만원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
- 배당금 외에 **농업 수익 발생시 추가 배당**

○ 주주형 공동영농은 참여농가가 영농법인으로 농지와 경영을 위임하고 법인이 들녘 전체를 책임 경영

○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동영농 참여 정도에 따라 별도의 인건비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 증가

- 영농활동에 참여한 농가에는 농기계작업 30만원, 일반 농작업 9만원씩 일당으로 지급

○ 영농 규모화, 첨단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소득배가 실현을 위해 구미, 문경, 예천 3개소에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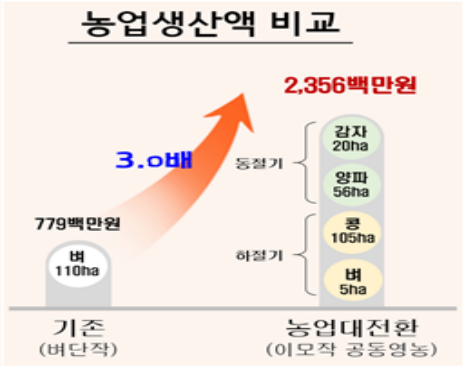
구미	문경	예천
공동영농형	공동영농형	첨단형
30ha, 45농가	110ha, 80농가	35ha
15억원	35억원	510억원
공동영농장비, 창고, 가공시설 등	공동영농장비, 창고, 교육장, 선별시설 등	곤충양잠거점단지 수직농장, 임대형스마트팜

3 기대효과

○ 총 110ha의 영순들녘은 기존 벼단작시 단지 내 농업생산액*은 7억8천만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콩 농사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봄감자, 양파가 수확되면 **기존에 비해 3배 늘어난 24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농진청 표준소득('20~'22년 3년 평균)

○ 소득모델을 체계화해서 선도모델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품목별로도 다양하게 소득이 배가되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농생명축산식품국]

○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생산성 및 소득은 감소하고, 2021년 65세 이상 농가수는 60%*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농촌을 위한 안정적 소득기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 농림어업조사 경영주 연령별 농가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업법인 수는 2000년 3,366개에서 2020년 24,499개로 7.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동기간 15.3배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매출액은 2000년 5억 500만 원에서 2020년 17억 5,18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농업법인을 통한

매출액 및 노동생산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모화 법인을 통한 농업은 향후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사료됨

*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농촌경제연구원, 2023.4.

○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반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 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음

-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사이 출생자)중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불금 **월 50만원/ha(매도), 월 40만원/ha(매도 조건부 임대)**

○ 현행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하는 소득배당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이양직불금액 보다 많은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들의 농사 참여를 촉진함으로 농업기술의 이전 및 청년농업의 육성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라 사료됨

○ 전북자치도에서도 **농업법인 지원을 통한 공동영농 및 주주형 영농을 확대**하고 **귀농인들에 농업체험 및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고, 고령의 농업인들에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

4.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서울특별시)

◇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가구 대상, 고령자 주거 특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1 추진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자 주거 안정 대책 마련

○ '고령층 · 1인가구 급증' 등 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2 주요내용

○ '청년안심주택'과 같은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 도입 (무장애 및 안전설계)

무장애 설계	첨단 특화설계
• 단차없는 단위공간 설계 • 손잡이 및 충격완화 바닥재 설치 • 돌출부, 예각부 원형처리	• 스마트기기와 연결한 IOT 서비스 • 침실, 화장실에 동작 감지 설비 • 응급 구조 자동 전송 시스템 설치

○ 주변시세 30 ~ 85% 수준 주렴한 임대주택 공급 (80%임대, 20% 분양)

○ 주거환경, 의료 · 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 · 경제적 여건 고려 공급

- 유동인구 많고, 병원 · 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 갖춘 역세권에 조성

3 참고사항

○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 병행

- 80% 임대 (공공, 민간), 세대수 기준 20% (주거 연면적 30% 이내) 분양주택 공급으로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
- 통상 12개월 걸리는 인 · 허가 기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 부여 (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상한용적율 최대 500%)

  *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 공급
- 건설자금 대출 최대 240억원 저리 지원, 이자 차익 2%지원 (대출금리 3.5% 이상 시)

《 정책효과 》

○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하여 관리비 부담 경감

○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신청, 계약, 퇴거까지)으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노년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신체 · 정신건강 ·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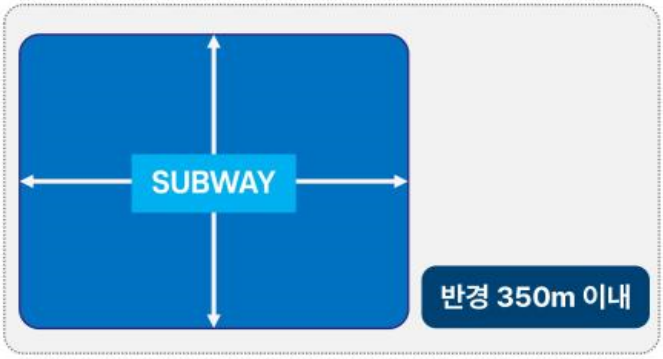
별첨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 공급하겠습니다.

역세권

전철역 등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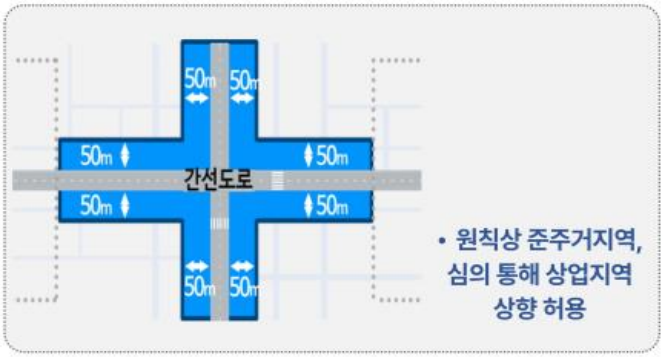
322개소, 가용지 면적 86km²



간선도로변

폭 20m 이상 도로변의 50m 이내

면적 127km², 총 연장 1,038km



의료법인

병원, 보건소 인근 350m 이내

- 총 84곳

2차 병원 42곳 (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 병원 14곳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 (자치구 보건소 등)




인구 변화 및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면 적
1,000m² 이상
용도지역 상향
준주거 및 상업지역 허용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 동일)
비주거 비율
준주거 5%이상, 상업지역 10% 이상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 동일)
주택구성
분양주택
(20%)
* 주거 연면적 30%,
세대수 20% 이하
임대주택 (80%)
공공임대
(20 ± α %)
민간임대
(50 + α %)
* 어르신 주거 비율 :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 1인 가구 비율 :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입주대상
가구 인원 및
연령 제한 없음
어르신
1~2인 가구
어르신 및
청년 1~2인 가구
부대시설 및
시설기준
무장애 안전 설계, 1인 주거 최소 23m², 의료차량 대기공간 확보 등
식당 및 의료지원시설(150호 이상)
보건지소 및 복지시설 설치(대지면적 5,000m² 이상 우선 검토)

청년 안심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의 비교

	청년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유형	100% 임대 (공공·민간)	80% 임대, 20% 분양
건축기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좌동
세제지원 (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좌동 (분양분 제외)
건설지원	건설자금 이자차액지원 2%	좌동
SH 선매입	공급물량의 최대 30%	없음
임차인지원	보증금 50%(최대 6천만원)	좌동
1인 주거 규모	최소 23m²	좌동
의무사항	-	무장애 및 첨단 IoT 설계 긴급차량 대기공간 확보 식당(150호↑) 및 보건지소(부지 5,000m²↑) 설치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24.1./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및 평가 ≫

◇ 자치조직·인사권의 자율성 확대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지속 개정 필요

□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근거 및 의의

○ 4개 특별자치시·도 모두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81개 조문)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30개 조문)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4개 조문)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31개 조문)

○ 특별자치시·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한 지역을 의미

-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범지역이자 선도적 역할 수행
- 향후 이들 지역이 설계한 자치모델의 성패에 따라 일반자치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

□ 특별자치시·도 주요 특례 비교

구 분	행정특례	재정특례	산업특례
제주	• 행정기구설치 자율성 •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 인사제도 운영 자율성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 보통교부세 총액의 3% •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 도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 및 감면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등	• 국제자유도시 조성 • 각종 산업발전 특례 * 1차산업,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육성 등 다수 특례
세종	• 행정수요 고려 조직특례 가능 • 국가와 인사교류 및 파견 등	• 보통교부세 25%(가산수요)(한시) • 보통교부금 25%(가산수요)(한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	• 해당사항 없음
강원	• 국가와 인사교류 및 파견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 4대 핵심규제 개선 * 환경·국방·산림·농림규제 완화 등
전북	• 국가와 인사교류 및 파견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 5대산업 육성 *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 등

□ 자치모델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

○ **자치조직 · 인사권의 자율성 확대**

- 현 특별법상 **조직 및 인사권의 경우 제주 제외 일반자치 지역과 큰 차이 없음**

  * 제주 : 자치조직권 특례, 기준인건비 배제, 조직구성 및 정원관련 도 조례 제정 가능

- 향후 세종 · 강원 · 전북의 경우도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을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등**, 조직 · 인사권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안정적 재원의 확보**

-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분권 실현 미지수

  · ('23년 기준) 광역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 50.1%

  · 세종 (69.7%), 제주 (36.9%), 강원 (29.4%), **전북 (27.9%)**

-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 발굴** 필요

  * 특정지역의 보통교부세 법정율을 상한할 경우, 타 지역이 그만큼 손해보는 구조

-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시행, 이로 인한 국세 징수 실질적 증가분에 대해 특별자치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등 필요

○ **법률의 지속적 정비**

-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에 **강원, 전북 포함 필요**

  * 현재와 같이 특정한 지역명칭을 모두 포함하거나, 지역명칭보다는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제시하는 등의 법 개정논의 필요

- 4개 지역의 각 특별법을 해당 지자체와 정부, 국회가 함께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함 (제주, 2006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7단계 걸친 입법화)

《 시사점 》

1 특별법상 재정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 지속

2 특례로 인정받은 조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 타 특별자치시 · 도와 연대하여 지방교부세 상향 작업 추진

4 국가공기업 설립 방안 강구 → 안정적 세수확보 등 시너지 효과 모색

2.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 ('24.02./한국노동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육아휴직 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으며,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된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요구됨

□ 육아휴직 사용 현황과 정책변화

-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1년 5만 7천 명에서 2015년 8만 2천 명까지 증가하였고, 2022년 9만 3천 명까지 증가함. 남성은 2011년 1,400명(여성 사용자의 2%)에서 2017년 처음 1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3만 8천 명(여성 사용자의 41%)까지 큰 증가추세를 보임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0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2017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중 1,0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사용자는 49.9%로 거의 절반에 달함. 2022년 기준 5~29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남녀 고용 격차는 거의 없었으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20%에 불과하였음

- **통상임금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월 300만 원 이상 임금 구간에 가장 많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분포함(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50%,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29%), 소규모 기업일수록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 분포 차이가 커 육아휴직 사용자의 임금 분포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 종사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사용자의 통상임금 분포, 평균 수급액에서 남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남녀 차이가 나는 곳은 대체로 중소기업으로 나타남

- **2017년은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된 시점**으로, 특히 2018년과 2019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한 휴직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각각 200만 원과 250만 원으로 증가한 시기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 상승 시기에 소득대체율이 높은 임금 구간대에서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2022년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0세 자녀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시기 남성과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모두 확대됨

□ 육아휴직 사용과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빈번히 관찰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은 성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뽑힘.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후 여성들이 일정 기간 육아에 전념하고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의 경력 단절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생활 균형을 지원함

- 자녀 출산 후 여성들의 취업 확률은 모두 감소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비교적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적게 나타남. 또한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 후 여성의 직장 복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출산 후 부부의 노동 공급과 소득 격차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 사용과 기업의 성과

- 육아휴직 제도 활용 기업, 자녀 1인당 육아휴직 제공 기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인원 대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인원은 2005년 이후 증가함. 고용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고 있었음

-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과 휴직 기간 증가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성을 나타내는 1인당 영업이익당 ROA(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확대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을 높이는 정책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 **(남성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사용의 남성 활용률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 노동시장 및 가구 내 성별 격차 완화 측면에서도 필요함.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부사이 가사 부담의 합리적 분배가 동반되어야 함.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가 필요함

- **(육아휴직의 균형적 확대)**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기업에 비해 성별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고 대체인력이 들어오더라도 한 사람의 업무 공백을 대신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음. 더구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어,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함. 대체인력 풀의 효율적 관리 및 대체인력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에서 나아가, 동료들이 더 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 및 휴가 등 보상책 마련을 생각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및 문화 개선)** 조직 내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분위기와 불이익 또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남성 및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동료 효과가 존재하고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함.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 육아휴직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함

-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 확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견주어 볼 때, 기간과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 유무에 따라 여성들의 근로 환경 격차가 크고,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됨

  1)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전일제 근로를 면제하는 형태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시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자녀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나, 육아휴직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음
  3) 유럽의 국가들처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여 육아휴직 사용 형태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지원과 홍보가 필요함

《 시사점 》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9만9천976명, 이 가운데 아빠의 비중은 27.1%로 꾸준히 증가세이며 2022년에 증가 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별첨1>

2 2005년 ~ 2019년 사업체 패널조사를 토대로 육아휴직 제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 사업체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잘 되는 경우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고용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임

3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일하는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등 제도적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음<별첨 2>

4 경기, 충북, 광주 등 타 광역 시·도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남성육아휴직 기업 지원 등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 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조례를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1> 2022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 분석

– 통계청 (2023.12.20. 보도자료 발췌)

□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9만 9,976명임**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대비 14.2%(24,866명) 증가한 19만 9,976명임
- 육아휴직자의 27.1%는 부(父)이고, 모(母)는 72.9%로 부(父)의 2.7배임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40.8%)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19.1%)에서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

- '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12.5% 증가한 8만 7,092명임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의 부모 중 '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대비 5.2명 증가한 35.0명임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4.4%)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에서 가장 높음

□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대비 4.3%p 상승한 30.2%임**

- '22년 출생아 부모의 '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6.8%, 모(母) 70.0%로 전년대비 부(父)는 2.7%p, 모(母)는 4.6%p 상승함
- 출생아 모(母)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세 미만(73.5%)에서 가장 높고,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8.7%)에서 가장 높음

□ **'13년에 출산하여 '22년까지 한자녀만 둔 부모의 경우, 모(母)는 자녀 나이 0세(83.2%) 때, 부(父)는 6세(19.0%)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2년 출산 모(母)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49.7%가 직업을 갖고 있고, 출산 360일 전보다 9.0%p 낮음**

□ **'21년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7% 감소, 모(母)는 증가, 부(父)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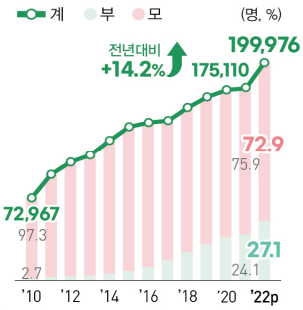
- '21년에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고용보험 출산휴가자는 8만 7,893명으로 전년(8만 9,374명)보다 1.7%(-1,481명) 감소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1만 7,471명으로 전년(1만 9,684명)보다 11.2%(-2,213명) 감소함
- 출산휴가를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1.1%)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3%)에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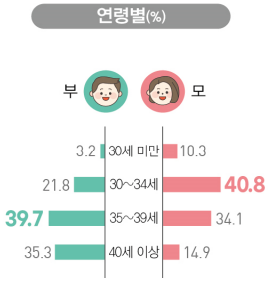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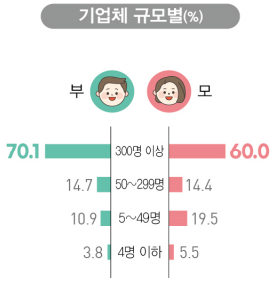
2022년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Statistics Korea

전체 육아휴직자 수 (시작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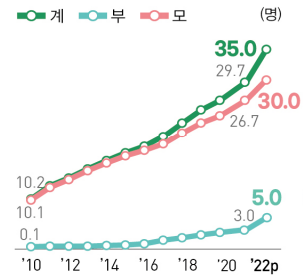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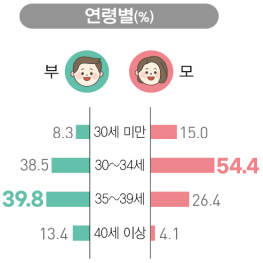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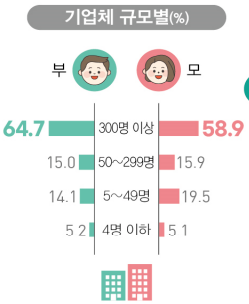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시작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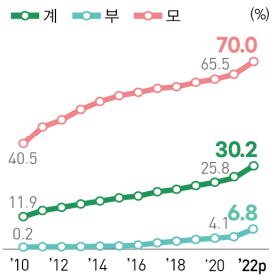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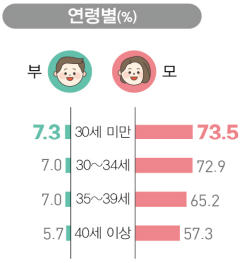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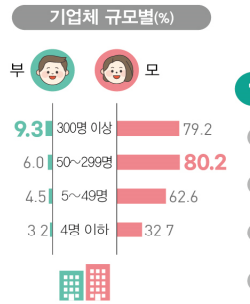




출생아 부모의 특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시작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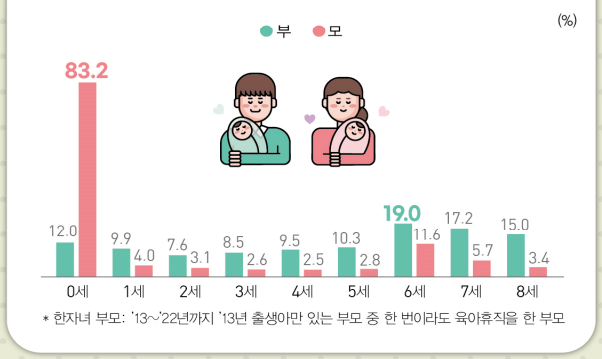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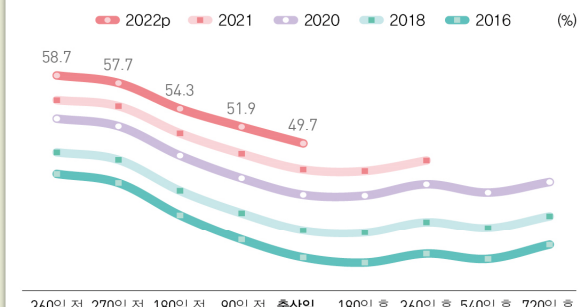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비중 (한자녀 부모*)



* 한자녀 부모: '13~'22년까지 '13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한 번이라도 육아휴직을 한 부모

출산 전 · 후 모의 취업비중



〈별첨2〉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 육아휴직 조부모의 대신 사용 및 분할 사용 확대

– 국회입법조사처 (2024.02.)

독일 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기여 요인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제도 유연성에 있다는 점을 발표함. **근로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제도 사용이 일·가정 양립, 그리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음. 외국과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비교적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방안을 더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출산율 반등과 육아휴직

- 출산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여야 및 정부는 주요 대책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육아휴직 자동 개시를 발표한 적 있음(여성신문 2024.01.25.)
-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개별 상황에 맞게 유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유연성과 활성화의 연관성을 관찰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의 의미 및 영향 요인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노동 시장의 성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독일 노동경제연구소는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사례 연구를 통해서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제도 유연성과 경제적 보상의 영향성을 탐색함
-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족단위로 육아휴직이 부여되어 최장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하며,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최소 2개월의 육아휴직 선택도 가능함
- 분석 결과, **제도적 유연성이 경제적 보상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더 많이 기여함**

□ 주요국 제도 유연성 사례

- 육아휴직 제도를 유연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은 실제 아동을 돌보는 자에게 육아휴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는 부모 당 6개월이 부여되며, 1회 사용 시 2주 이상이면 분할 사용도 가능
- 스웨덴은 240일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1년에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 확보 방안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와 최소 사용 기간 등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양도 허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돌보는 자에 대한 제도 양도 허용, 시**간활용 자율성 확보 등 근로자의 업무 조절 및 지속성과 관련하여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3. 그린바이오산업의 농업부문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농촌경제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그린바이오산업 파급효과를 통한 농업부문의 발전방향 제시

□ 그린바이오 산업 현황

○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신소재 개발을 위해 농업 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첨단산업이며, 농자재(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 기능성 농산물, 식품소재, 그 외 산업 소재로 분류

○ 2022년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는 7조 9,620억 원으로 연평균 11.8% 성장하였으며, 그린바이오 기반 농자재 시장이 85.0%, 식품소재가 12.9%, 기타 산업 소재 및 서비스 분야가 2.2%를 차지

□ 그린바이오의 경제적 파급효과

○ 그린바이오 산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린바이오 산업에 투입되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사용한 농축산물은 7,208억 원으로 연평균 2.2% 감소

○ 타 바이오산업계에서 구입하는 그린바이오 기반 중간재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바이오 식품 분야의 구입 규모(9,110억 원)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

□ 그린바이오의 기업사례분석

○ 그린바이오 업체와 농가는 협업을 통해 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선 확보와 농가는 재배시설 및 기술 개선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지속적인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와 농업계는 양자 간의 인식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농업계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균등 품질의 농산물을 일정량 이상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산업계는 지속적인 국내산 농산물 구매를 통해 농가의 생산 및 매출 기반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1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계에도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그린바이오 농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하며, 그린바이오 농업과 산업계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 확립, 그린바이오 농업기반 강화가 필요

3 그린바이오 농업 성장을 위해 대량생산체계를 갖춘 클러스터 추진, 일정규격과 품질기준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GAP) 및 우수 한약재 생산관리지침(GACP)의 적극적 정착, 스마트팜 기반 표준생산법 확립 등이 필요

4 농업계와 산업계의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내 협력적 거버넌스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구축, 기업 맞춤형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생산-산업화 시스템 구축,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이 필요

5 그린바이오 농업기반 강화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우량종자 전파 및 품질관리 방안확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조금 확보 및 이를 통한 국내산 그린바이오용 농산물 홍보 등이 필요

6 그린바이오 농산업계의 현안문제 파악과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분야와 후방산업의 통계구축 및 실태조사가 필요

4. 건설업 ESG 확산과 기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24.1./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요약 및 평가 ≫

◇ ESG 경영의 핵심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건설업 거버넌스의 현황 파악 및 방향성 설정

□ 연구배경 및 현황

○ 최근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ESG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ESG는 그 중요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환경(E), 사회(S) 분야와 긴밀히 연결된 ESG의 핵심 분야임

○ 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거버넌스 관련 제도는 '거버넌스'가 아닌 '기업지배구조'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제도 마련의 초기 단계로서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나 점차 확산될 예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고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시로 전환되었으며, 점차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대상을 늘릴 예정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일정 》

구 분	대상 (자산기준)	보고서 제출 기업 수[1)]	보고서 제출 건설기업 수[2)]
'19 ~ '21년	2조원 이상	175	8
'22년	1조원 이상	265	15
'24년	5천억원 이상	406	17
'26년	全 코스피 상장회사	733	23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2.3.7)

1) 금융회사, 투자회사 등 제외 ('20년 결산 기준)

2) '22년 결산 기준

○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타 산업보다 큼에도 불구, 대기업 위주의 ESG 대응이 이루어지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

□ 건설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 ESG 경영추진 및 성과공유 : ESG 경영추진에 대한 리더의 의지와 경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주의 권리 보호,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 필요

○ 준법·윤리경영 : 기업 내 준법·윤리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

○ 리스크 관리 :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활동

《 시사점 》

1 기업의 효율적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업에 속한 기업과 개인 모두가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공유해야 함

- 거버넌스 측정 지표 마련을 통한 감독이나 평가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
-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업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에 이해관계자를 배려·존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한 법인격으로의 변화가 필요
- ESG 경영은 건설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2 정부, 발주자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 하나하나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건설업에 임한다면 건설업의 미래는 속도와 관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5. AI 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24.1./한국교육개발원)

≪ 요약 및 평가 ≫

◇ AI 기반 맞춤형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 대상 실제적인 내용 연수 및 관련 서비스 도입과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개요

○ 최근 첨단 디지털 기술이 교육 영역에 활발히 도입하여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 교육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 AI 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파악*이 필요

* '23.8.7~8.18까지 전국 초·중·고에 재직중인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AI 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과 경험

○ 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 및 준비도

- 평균 3.83점(5점 만점)으로, **초등학교**(평균 3.89), **35세 미만**(평균 3.98)**의 교사**가 타 집단의 교사들보다 **동의 정도가 높음**

○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구)의 활용 경험

- "들어는 봤지만 사용해보진 않았다"는 응답 40.6%,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21.3%로 **61.9%의 교사가 실제 활용 경험이 없음**

○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학교급별로 응답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제한된 수업 시간에 추가적인 도구 활용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초 47.5%, 중·고 42.6%로 가장 높음.



[그림 2]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상위 5개, 중복응답)

○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구) 활용 교과목

-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 학교 수업 등” 46.7%, 수학(44.3%), 영어(42.4%), 과학/실과(40.8%), 예술(32.9%) 순. 한편, 실제 활용 교과목은 수학(60.1%), 영어(39.0%), 사회/도덕(32.5%), 국어(28.5%), 과학/실과(27.2) 순

- (중·고등)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 수업 등” 57.5%, 정보, 컴퓨터(38.9%), 영어(26.1%), 수학(23.5%), 과학(23.5%) 등의 순. 한편, 실제 활용 교과목은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 수업 등”(50.0%), 사회, 역사, 도덕(21.4%), 영어(17.5%), 수학(16.7%), 과학(15.9%)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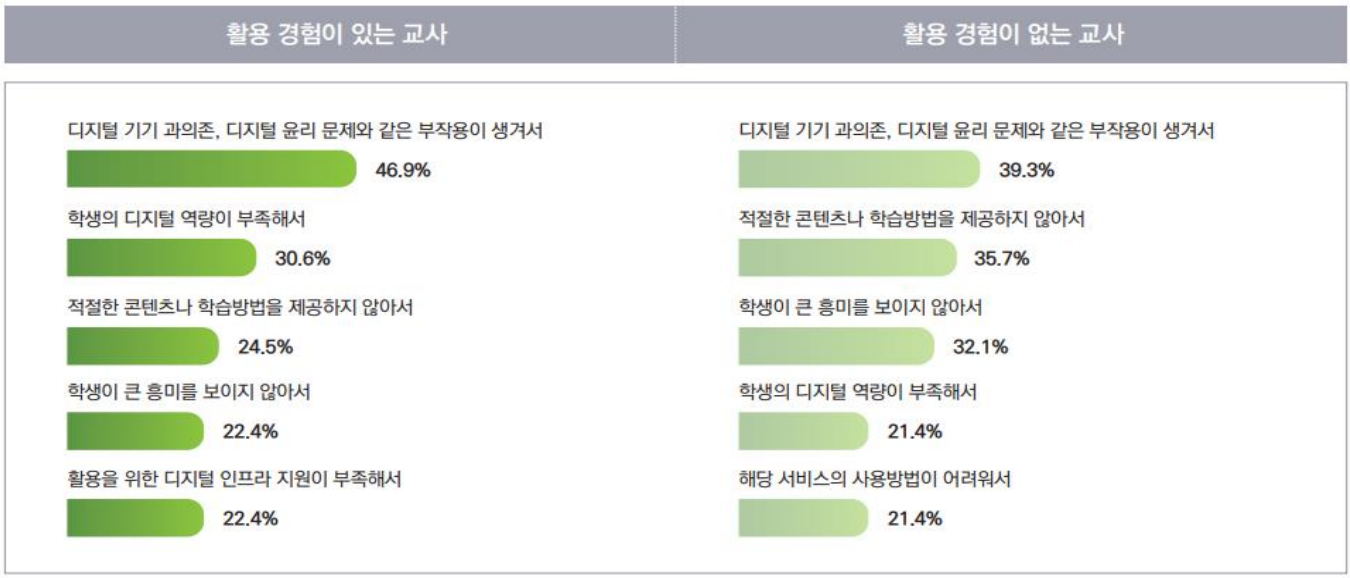
○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구)의 긍정적 효과

-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교사(923명)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활용 경험 없는 경우, 597명)하는지, 혹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활용 경험 있는 경우, 326명)를 분석함. 그 결과, 기대 효과의 경우 “인지적 영역 향상

(이해도 증진, 학습 내용 보충 등)” 62.6%로 가장 높고, 한편 실제로 경험한 효과는 “정의적 영역 향상(학습동기, 교과흥미, 수업만족도 등) ”62.6%로 “인지적 영역 향상” 53.4% 보다 높게 나타남

○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구)의 효과가 없는 이유

-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7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해보지 않은 교사(49명)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윤리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서” 46.9%, 활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28명)는 39.3%로 응답



[그림 5]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효과가 없는 이유
(상위 5위, 중복응답)

○ AI 기반 맞춤형 교육에서의 AI와 교사의 역할 비중

- “교사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AI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84.8%로 가장 높음

《 시사점 》

1 다수의 교사가 AI 기반 학습 서비스(도구)를 사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안내(홍보), 활용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준비도에 대한 인식도 낮아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령을 고려한 교사 연수** 필요

2 미활용 이유로 제한된 수업시간에 추가 도구 활용에 대한 부담과 기기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됨. **활용 교육 강화** 및 **기기 관리 방안 마련**

3 AI 기반 맞춤형 교육서비스 활용 교과목 관련

- **(초등)** 이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교과수업, 없는 교사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활용한다고 응답, **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에 대한 안내 필요**
- **(중·고등)** 활용 경험과 무관하게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으로 응답하여 입시 위주 교육으로 **교과 수업 활용에 현실적 제한에 대한 점검**, 초등에 비해 **콘텐츠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보완 필요

4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활용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정의적 영역(학습동기, 교과흥미, 수업만족도 등) 향상을, 활용 경험이 없는 교사는 인지적 영역(학습자의 이해도 증진, 학습내용에 대한 보충 등)의 향상을 1순위로 응답. 상반된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교육 환경, 교사와 학생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5 AI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올바른 서비스 활용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6 대다수 교사는 AI를 수업 보조 도구로 인식하나 AI의 보조를 받는 수업 상황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변화된 역할을 명확히 규명, 교사 연수**를 통해 안내 필요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첫만남이용권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고려한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2022.1.1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609억 9,200만원 증액된 3,803억 6,300만원 편성하였다

[2024년도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첫만남이용권 지원	325,270	319,371	380,363	60,992	19.1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월)에 따른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과제로 "아동 출생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첫만남이용권)" 발표하여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 2024년 예산안에 기존비용은 2024년 장래인구추계 중위값을 적용하여 23만4,000명에 대하여 아동 1명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부터 둘째아 이상 추가 비용을 도입**하여, 2022년 출생·사망통계 둘째아 이상 비중(37.3%)을 적용한 **87,000명에 대하여 출생아당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2024년 첫만남이용권 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산출내역
첫만남이용권 지원	① 첫만남이용권 지원: ('23) 319,241→ ('24요구) 380,183백만원, +19.1% - (요구)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상 인구증가 예상 및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으로 '23년 대비 +18.8% 증액 요구 - (산출) 1) 기존비용: 2백만원(지원단가) × 234천명('24년 장래인구추계 중위값) × 68.5%* * 국고보조율: (서울 35%, 그 외 65%±10%), 평균 68.5% 2)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추가 비용: 1백만원(지원단가) x 87천명(234천명 x37.3%(2022년 출생사망통계 둘째아 이상 비중) x 68.5%
사업운영관리	② 사업운영관리: ('23) 130→ ('24요구) 180백만원, +38.5% - (요구) 원활한 바우처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운영관리비 요구 - (산출) 1) 시스템운영관리: 민간경상보조 150백만원 2) 사업관리 및 지원: 일반수용비 25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 국내여비 1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 **첫째,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24년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대상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대상 출생지원금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이었으나, '24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아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였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을 고려하여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상술한 바와 같이 첫만남이용권 지원의 법적근거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3항이며, 동 법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 사업은 '24년에 둘째아 이상 추가 비용을 출생아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4년 장례인구추계 중위값 23만 4,000명에 2022년 출생·사망통계 둘째아 이상 비중(37.3%)을 적용한 87,000명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595억 6,690만원을 편성하였다.
- 하지만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첫만남이용권을 20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4년 신규로 도입되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대상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추가 지급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추가 지급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법적 근거 마련 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첫만남이용권 사업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출산지원금 지급현황 및 지역별 편차 등을 파악하고 재원 투입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21~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총 2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신규 추진되면서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남 등에 소재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폐지하여 총 20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다.

[2021~2022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21	25	16	5	10	5	4	5	0	31	18	11	15	14	22	23	18	0	222
2022	9	16	4	10	5	4	5	0	30	17	11	15	14	22	23	17	0	202

주: 1. 표 내용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기준
2. 2022년 기준 부산 기장군,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군산시, 경북 안동시, 경북 구미시, 경북 군위군, 경남 밀양시는 2개 사업(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등)을 추진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하지만 2022년 기초지방자지단체 출산지원금 예산의 규모는 2,120억 7,8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모두 전년 대비 출산지원금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서구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대덕구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년도 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순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생순위별로 보면 첫째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둘째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대비 최소 지원금액은 전체적으로 인상(5만원→10만원)되었으며, 셋째아 이상 최대 지원금액은 인하(3,200만원→3,000만원)되었다.

[2021~2022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21	5	720	5	1,400	5	3,200	5	3,200	5	3,200
2022	10	800	10	1,400	10	3,000	10	3,000	10	3,0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즉,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으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사업은 일몰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사업 수는 줄었으나, 다수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둘째 또는 셋째 출생아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출산지원금 전체 예산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지역별,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은 최대 300배(최소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앙에서 동 사업 진행 시 지역별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차원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4년 예산안에 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대하였고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체적인 출산지원금 재정 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 중앙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어, 사업 간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황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보편적 지원방식**과 **지자체별 지역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및 지역별 편차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재원 투입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 황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 사업이다.

[2024년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사업	-	-	1,500	1,500	순증

자료: 새만금개발청

○ 해당 사업은 산단의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개발지침상 변경주기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4~2025년에 걸쳐 3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의 50%인 15억원이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2023년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사업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변경 범위, 기본계획 변경시 하위 계획 변경 필요성 및 2023년 수립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부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3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2.12)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35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제4조에 근거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있다.
-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추진근거와 토대가 되는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MP)으로,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 사업은 **산단의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개발지침상 변경 주기(5년)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투자 급증,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의 변화된 개발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2021년에 전면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수요 증가 등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되 **기존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과의 정합성도 매몰비용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등 2024년 기본계획 변경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새만금개발청은 2014년과 2017년에 기존 기본계획이 국내외 도시들의 투자유치 경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용지 세분화, 주거·상업기능 집적유도 및 개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1년에 과거 10년간의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용도별 배치, 토지이용 등 용지조성계획 및 교통·인구 등 각종 지표를 재검토하는 기술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연혁]

구 분	소요 금액	기간	주요 내용
2011.03	42억원	16개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 8대 용지 : 농업·복합도시·산업·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생태환경·도시·다기능 용지
2014.09	3억원	12개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9)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 투자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계획 및 용지체계 단순화(8→6대 용지) - 6대 용지 : 산업연구·국제협력·관광레저·농생명·환경생태·배후도시 용지
2017.12	-	-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한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잼버리부지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2021.02	32억원	18개월	1단계 사업 종료('20년) 이후 새만금의 미래상과 개발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신재생에너지, 우선추진도로 등) -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50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로드맵 마련,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여건 개선
2024(안)	30억원 규모	2024년~2025년	차질없는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자료: 새만금개발청

- 특히 2021년에 추진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은 소요금액의 규모에 있어 2011년의 최초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시의 규모와 유사한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업이 2022~2023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바, 2022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1차년도 과업을 수행하였고 2023년에 10억 3,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중에 있다.

- 이렇게 **2021년 기본계획 전면 재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에 기본계획을 또다시 전면적으로 변경**할 경우, 총 25억 3,400만원이 투입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후속 조치 또한 새로운 계획에 따라 다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매몰 비용 발생 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 한편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2024년도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는바, 새만금개발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9억 2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2,449억 9,600만원, 2023년 본예산 기준 1,483억 6,900만원에 비해 각각 2,150억 9,400만원, 1,184억 6,700만원 감액된 규모이다.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A)	2023 예산(B)	2024 예산안(C)	증감	
				C-B	C-A
총 계	244,996	148,369	29,902	△118,467	△215,094

자료: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몰 비용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 범위, 기본계획 변경시 하위 계획 변경 필요성 및 2023년 수립한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 및 **계획 변경 내용 등을 확정**하여 **새만금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산정제도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가. 현황

○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중 상속세 세입은 8조 5,9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9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여세는 6조 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144억원 감액 편성되었다.

[2024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상속세	7,611,302	8,954,600	8,594,700	△359,900	△4.0
증여세	6,982,717	8,172,800	6,058,400	△2,114,400	△25.9

자료: 기획재정부

나. 분석의견

○ **최근 상속·증여세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이 관련 규정과 달리 시중금리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설정되고 있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상속·증여세를 일괄납부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중금리와 가산금 이자율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세의 일부를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장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경우에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을 할 경우 납부세액에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2023년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2.9%로 규정**하고 있다.

- 2021년 이전 가산금 이자율 추이를 보면 매년 1회 적용금리를 조정하여 왔고 시장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2년의 경우 시중 평균금리가 1.19%에서 3.11%로 상승하였음에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1.2%로 유지하였는바, 이로 인해 연평균 금리기준으로는 0.92%p 차이가 발생하였고, 2022년 3분기 금리차는 3.49%p에 이르렀다.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및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추이]

(단위: %, %p)

구 분	1년 만기 정기예금[1] 평균금리 (A)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B)	(A-B)
2013	2.89		3.4	△0.51
2014	2.53		2.9	△0.37
2015	1.81		2.5	△0.69
2016	1.56		1.8	△0.24
2017	1.66		1.6	0.06
2018	2.02		1.8	0.22
2019	1.85		2.1	△0.25
2020	1.16		1.8	△0.64
2021	(1분기)	0.95	1.2	△0.25
	(2분기)	0.97		△0.23
	(3분기)	1.19		△0.01
	(4분기)	1.66		0.46
	평 균	1.19		△0.01
2022	(1분기)	1.89		0.69
	(2분기)	2.35		1.15
	(3분기)	3.51		2.31
	(4분기)	4.69		3.49
	평 균	3.11		1.91
2023	(1분기)	3.85	2.9	0.95
	(2분기)	3.62		0.72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통화금융통계」) 및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로 인해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특히 2021년에 대규모 연부연납세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상당 규모의 기회손실을 발생**시켰다.

[2018~2022년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 및 연부연납세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귀속연도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액		연부연납세액		신고세액		연부연납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8	8,449	3,975,696	1,210	1,736,198	145,139	4,468,521	4,108	1,360,827
2019	9,555	3,672,276	1,406	1,424,896	151,399	4,910,395	3,866	1,200,243
2020	11,521	5,176,495	1,695	2,067,454	214,603	6,852,792	7,232	1,740,045
2021	14,951	20,448,353	2,605	13,657,180	264,274	8,351,445	10,516	2,236,239
2022	19,506	13,725,275	4,756	4,360,501	215,640	6,822,908	9,156	2,032,201

자료: 국세통계포털

- 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국세환급 또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대하여 기회비용에 따른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가산금 이자율**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연부연납에 따른 기한의 이익** 외에도 **금리차에 따른 추가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상속·증여세를 원칙에 따라 일괄 납부한 납세자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과 같으므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 즉, 납세자의 선택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과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기타 참고자료

Ⅴ. 기타 참고자료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24.2.20.시행)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이 추가 되고, 지방의회의원후원회에 후원인의 기부한도 및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가 정해짐

□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2022. 11. 24. 2019헌마528등).

□ 주요내용

○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제2호의2

-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

※「정치자금법」 부칙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음

○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 200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 100만원

○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 3천만원

○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 워킹맘 25%p 급증… 「경단녀」 사라진 홍콩의 기적 뒤엔 이들이 있었다('24.2.13. / 조선일보)

이르면 다음 달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에 들어온다. 당초 작년 12월 시작할 예정이었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 일정이 다소 늦춰졌기 때문이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첫발을 떼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과연 출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는 논쟁이 많다. 돌봄·건강·교육 등을 경제학적 통계 방법을 활용해 연구하고 있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를 최근 만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계의 연구 성과를 물어봤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150여 명의 자료를 만들어 연구도 하고 있고, 실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집에서 쓰고 있다.

- 가사도우미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하나.

"가사도우미 송출국 중 필리핀, 수용국 중 홍콩을 뽑아, 이 두 곳 사이에 가사도우미로 이주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홍콩에 온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주 6일, 하루 14시간 일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를 번다. **50% 이상이 대졸 이상**이다. **이들의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80만원)**다. 그런데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

- 홍콩, 싱가포르는 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제도화했나.

"**홍콩, 싱가포르는 1970년대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노동력이 모자라자 여성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려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홍콩은 출산율이 2명은 되던 때라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여성 고용 증대 정책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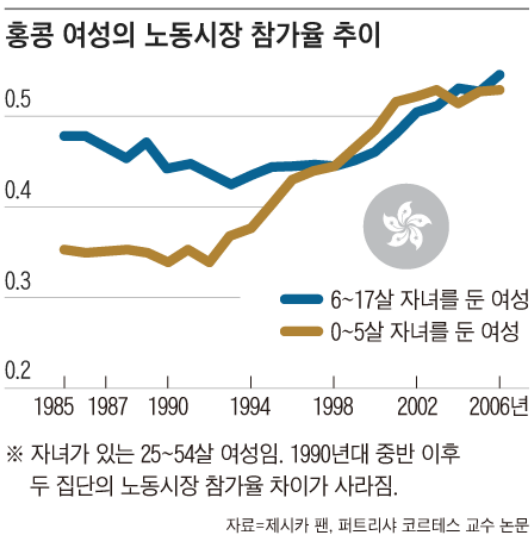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여성 고용을 늘린다

- 여성 고용을 늘렸는지 연구가 있나.

"많은 **경제학 논문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노동경제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노동경제학저널'에 2013년 싱가포르의 유명 여성 경제학자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와 퍼트리샤 코르테스 보스턴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그 효과를 분명하게 분석해 냈다."

- 논문은 어떤 내용인가.

"홍콩에서 1974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후 5세 미만 아이를 가진 엄마와 6~17세 자녀를 둔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를 비교 분석했다. 둘은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5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이란 점에 착안했다. **처음엔 5세 미만 아이를 둔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6~17세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15%포인트 넘게 낮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대중화된 **1990년대 들어 차이가 사라졌다**. 특히 대졸 이상 여성만 보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평균 25%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대졸 여성이 평균적으로 50% 일했다면, 지금은 75%가 일하게 됐다**는 뜻이다. 나는 이제까지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25%포인트 올린 정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홍콩에서 소위 '경단녀'라고 불리는 경력 단절 여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 효과가 날 때까지 20여 년이 걸렸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도입 초기인 1981년쯤 25~54세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이 5300홍콩달러였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은 이의 4분의 3인 4000홍콩달러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 홍콩에서 여성 임금이 빠르게 올랐다.

가사도우미는 거의 그대로였다. 그 결과 가사도우미 임금이 여성 임금의 30~40%로 떨어졌을 때, 수요가 크게 늘고 여성 고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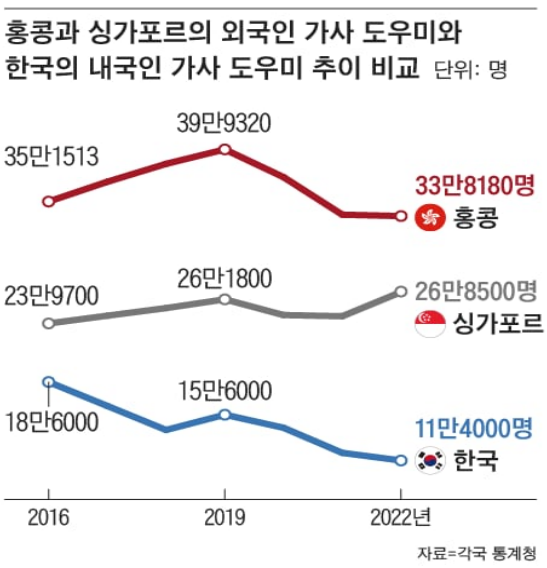
◇ **출산율 제고는 긍정적이나 분명하진 않아**

- 그런데 그 사이 홍콩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출산엔 역효과를 주는 게 아닐까.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건 쉽지 않다. 비슷한 집단을 비교해야 효과를 알 수 있는데, 출산 나이와 조건이 워낙 사람마다 달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 출산을 좀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 완벽하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산을 늘린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홍콩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마저 없었으면 더 떨어졌을 것 아닌가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

- 아이 돌봄 효과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가장 시급히 필요한 곳은 노인 간병 분야**다. 최근 한국에선 요양 병원에서 간병인을 못 구해 난리다. 2007년 오스트리아는 간병 시장을 확 개방해 동유럽에서 건너온 간병인이 1만명에서 2012년 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자영업자 형태로 일했는데, 간병 분야 내국인 연평균 소득 2만 유로보다 낮은 8000유로 정도를 벌었다. 작년 노동경제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들이 부모가 아팠을 때 성인 자녀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어떻게 될까.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홍콩인의 3분의 1쯤 되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서울에서 진행될 시범 사업엔 월 200만원쯤인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홍콩은 가사도우미 임금이 여성 임금의 30~40% 됐을 때 확 늘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선 최저임금의 3배 정도인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어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중위 소득 여성의 평균 임금이 월 320만원쯤이니 부담이 크다. 물론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가 월 350만~450만원을 받는 것보다는 낮다. 하지만 일하는 엄마인 워킹맘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높아 보인다."

- 해법은 없을까.

"근본적인 해법으로 **최저임금을 직역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받는 가사사용인으로 보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이 국내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때 보조금을 주는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맞벌이가 좋다고 가정한 건 아닌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건 이들을 **강제로 쓰라는 게 아니다. 선택지를 하나 더 주자는 것**이다. 여성이 워킹맘이냐 전업주부냐를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경제적 후생이 더 좋아질 것이다."

- 국내에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시범 사업 규모를 가능하면 5000명, 적어도 1000명 정도로 하고, 기간도 지금의 6개월이 아니라 2년은 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같은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 곳과 아닌 곳을 비교해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실생활 속 사회 실험으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마닐라서 아이 맡기고 산책하며 "몇 년 만이냐" 감격
김현철 교수가 경험한 가사도우미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미국 코넬대 교수로 있다가 홍콩과기대 교수로 옮기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들고 있다. 왜 그런지도 들어봤다.

- 언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처음 접했나.
"미국 코넬대 교수를 하던 중 안식년을 맞아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일하면서 처음 접했다. 당시 비용은 1인당 월 20만원이었다. 미국서 첫째를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만 한 달 250만원이었는데, 육아 비용 부담이 확 준다는 걸 체감했다. 그뿐 아니다. 아이를 맡기고 부부가 동네를 산책하다 시원한 음료를 한잔하면서 '이게 몇 년 만이냐'며 감격했던 일이 생각난다. 아내는 박사 학위 논문의 대부분을 필리핀에서 쓸 수 있었다."

- 왜 홍콩을 선택하게 됐나.
"그러던 중 둘째 임신을 알게 됐다.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이 둘이면 어린이집 비용만 한 달에 5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내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했다.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려고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있는 홍콩,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직장을 물색**했다. 두 곳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있기도 했다. 결국 좋은 조건을 제시한 홍콩과기대를 선택했다."

- **홍콩에서 체험한 가사도우미**는.

"**월 100만원 정도** 들었다. 최저임금은 월 80만원쯤이지만, 식대로 추가 20만원을 부담했다. 또 **의료보험료, 연 1회 항공료 등도 부담**했다. 그리고 적정한 주거 공간도 제공해야 했다. 대신 우리 부부는 교수로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의회